



보건실 운영 규칙

규정번호	3-4-18		
제정일자	2012. 12. 21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 0	총페이지	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실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성) ① 학생과 교직원의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양미래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 내에 보건실(이하 “보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건실에는 학생부처장을 실장으로 하며 간호사면허증을 갖춘 전문 직원을 둔다.
 ③ 보건실에는 별도의 안정실을 둔다.

제3조(기능) 보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3.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에 관한 사항
4.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상해보험과 유학생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6. 학생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보건사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수칙) 보건실 이용학생은

1.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정숙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2. 환자 외의 출입은 담당자의 허락을 받는다.
3. 본인이 오도록 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어 약을 타지 않도록 한다.
4. 가능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한다.
5. 안정실을 이용하려면
 - 가. 1~2시간 안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
 - 나. 귀가하기가 힘든 경우
 - 다. 질병으로 인하여 조퇴허락을 기다리는 경우
 - 라. 졸도·빈혈·심한 외상인 경우

제5조(보수교육) 전문 직원은 대학보건사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총장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